경상북도 공고 제2019 - 272호

2019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

2019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변경내용

4 응시자격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

【변경 전】

분 야 (계 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소방특별조사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분야 자격증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및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근무한 경력
화재조사 건축 (지방소방사)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변경 후】

분 야 (계 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소 방 특 별 조 사 (지방소방사) **변 경 내 역**	○ 소방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분야 자격증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아래 ①, ②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및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근무한 경력 ②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보조) 근무경력
화 재 조 사 건 축 (지방소방사) **변 경 내 역**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아래 ①~③ **【붙임12】**,④, ⑤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관련 [별표1]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 ②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전문분야 항목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등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보조) 근무경력

2. 기타사항

가. 위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 변경** 이외의 내용은 2019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19-239호, 2019. 2. 13.)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방행정과 인사채용부서(☎054-880-6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2】

건축분야 인정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건축사법」제4조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건축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설계·사업관리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